



학생중심, 현장중심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2022. 2.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차 례

<참고>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주요 내용

I. 추진 배경 및 추진 근거	1
II. 추진 방향	2
III. 세부 운영	3
1.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3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	5
3.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6
<참고자료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내용	12
<참고자료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13
<참고자료 3> 학생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	18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19
<부록>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안내	28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주요 내용

구 분	쪽수	주요 내용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9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장소 수정
		<p>(변경 전)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란 교내·외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함</p> <p>(변경 후)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란 교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함</p>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	16	<p>○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기준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하되,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 학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 위원회를 통해 승인 또는 인정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4 11	<p>○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확인 필요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14	<p>○ 단순 물품 및 현금 기부 기준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예시)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14	<p>○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기준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학교 연계 필수 조건 아님) 예시)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 - 단,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을 인정함.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I. 추진 배경 및 추진 근거

1. 추진 배경

추진 배경

- »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영역의 다양화·내실화 추진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필요
- »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행정안전부)과 연계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필요

2. 추진 근거

-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8~2022)
-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2)
-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8.)

II. 추진 방향

목 표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실 행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운영

추진 방향

-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강화

학생의 흥미, 특기를 활용한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일관성 있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절차, 기본 인정 기준 및 내용별 인정(예시) 안내

-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단위 학교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지역협의체 협력 체제 구축 및 봉사 프로그램 발굴·보급

III. 세부 운영

1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가. 단위 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운영

-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 계획 수립
(학기 중에 추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관, 즉 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31곳 및 VMS(경기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기초지역관리본부 25곳과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기관 파악 후 적극 안내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양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타 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관련하여 협조 및 요청할 경우 인정 가능 여부 검토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봉사활동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정확한 연수 및 이해 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기록 및 지속적인 관리 필요
 -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 예방
- 사례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등)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에 문의 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탑재된 봉사활동은 무조건 인정된다고 생각함

사례2.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경우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하나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인정 불가한 봉사활동을 인정함
- 교사들이 봉사활동의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공유하고,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적인 봉사활동 활성화**
 -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 확인자와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장소, 내용,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시 연락하여 확인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학생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전 생애 봉사활동의 기반 마련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담당교사가 반드시 입장 지도하여** 봉사활동의 취지 및 안전에 유의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계획서 **승인 시 기관, 내용, 영역, 안전 등에 유의하여** 검토한 후 승인

나.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교육 실시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
 - ※ 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党性)
- 봉사활동의 의미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

-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연간 2시간 이내 권장)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 ※ 감염병 등으로 인해 대면 소양교육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으로 실시 가능
-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외에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인정 불가

다.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6317호, 2019.8.6. 공포)
- 구성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부장은 당연직으로 함
 - 위촉직 위원은 학생봉사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할 수 있음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교별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단, 소규모학교 등 개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운영할 수 있음
- 기능
 - 학교 학생봉사활동 방향 수립 및 학생봉사활동 계획 수립, 실행, 평가 지원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교육
 -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
 -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 학생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등 봉사활동 인정 기준
 -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음

라. 교사·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육지원청) 학교 봉사활동 담당자 대상으로 학년 초에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안내 및 연수하여 학생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초 학교봉사활동 소양교육 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총회 시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반드시 안내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에 학생 봉사활동 관련 교육자료를 탑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학생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자료 3>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통일된 인정 기준안 안내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기준

가.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확인 강화

- 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및 VMS 기초지역관리본부와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기관 파악,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시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지도 및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

나. 봉사활동 인정 시간 기준의 기본 원칙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해야 봉사활동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평일 인정 시간 :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시간: 8시간
- 1일 인정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및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	×	○					×	×	×	×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하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3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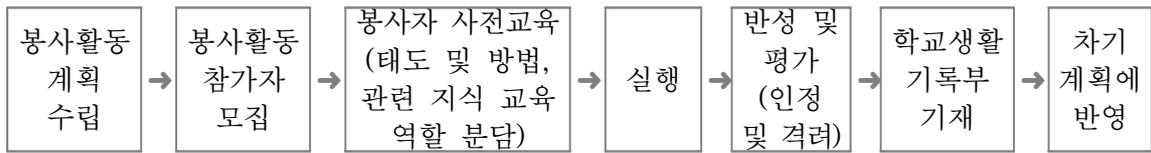
-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영역(3개) <참고자료1>**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영역으로는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3가지 영역이며, 학교에서는 내용에 따라 학교봉사활동 운영(예: 급식도우미(이웃(친구) 돕기활동), 학교숲쓰레기줍기(환경보호활동), 교내 각종 캠페인활동(캠페인활동) 등)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일상적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학교별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
-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봉사활동 시간은 **학년도별 10시간 이내 편성 권장**

○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도 **종류별 10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되, 전교생 대상의 모집 절차 공정성 확보**, 봉사활동 **종류의 예: 급식도우미, 학교행사도우미, 정보화기기도우미, 도서정리도우미 활동 등**
- 종류별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예: A학생이 급식도우미, 행사도우미, 도서정리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B학생이 1년 동안 급식도우미를 계속하는 경우 등 지양)
- 취지: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소수의 특정 학생이 독점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봉사활동 절차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

○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수행 절차(예시)

단 계	활동 내용(예시)
(1) 사전 교육	•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 봉사활동 현장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 유의사항 이해
(3) 실천	• 봉사활동 실행 (및 필요 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 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2) 영역별 지침 - (다) 봉사활동
 -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기준(예시)

기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 지속성 등
협력도	• 집단 활동에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 지속성 등
열성도	•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기준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나. 평가-(1) 학생 평가-(나)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나.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절차

[학생]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학생]
봉사활동 실행

→

[학생]
봉사활동확인서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으로 전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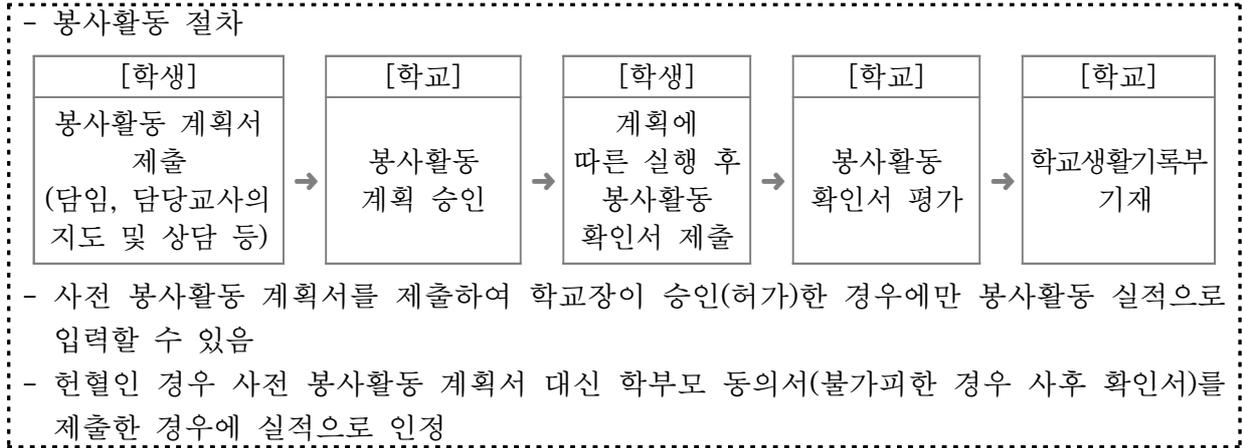
[학교]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실적 연계사이트를 활용(신청 → 실행 → 전송 → 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전 담임 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실적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소양교육, 가정통신문, 교사 연수 등을 활용)
-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전송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한 내용 캡처본과 함께 봉사활동확인서로 봉사활동을 인정**
- 학생이 학년말(2월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학생에게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을 증빙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다.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란 교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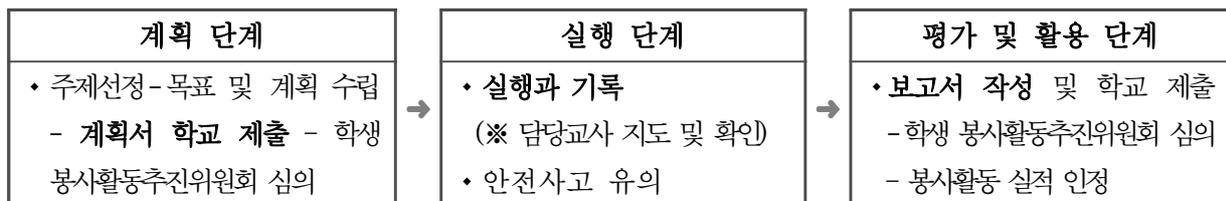
○ 구성원별 유형

- **개인형**: 학생 개인이 자신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모듬형**: 흥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고등학교 권장)
- **융합형**: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연합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 대상 등을 결정하여 장기간 함께 실시하는 봉사활동(초등학교 권장)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 **기간**: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
- **장소**: 교내에서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프로젝트 봉사기간 동안 계획된 장소에서 활동
- **활동 내용**: 학생의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되, 「2022 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함

- 절차



- **평가**: 학년말(학기말)에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 평가 및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발급,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 기록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권장

• 학교교육계획에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반영하여 운영
예)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우리학교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발굴하고 봉사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추진 시 인정 기준, 절차 등 모든 사항은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준하여 실시

• 봉사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는 <참고자료 4> 예시 서식을 참고하되, 학교 자체 양식 개발 활용

라. 교육청 및 단위학교 협조사항

도교육청

○ 경기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 구성: 경기도교육청 봉사활동 담당부서 과장, 장학관, 장학사 및 교육지원청 봉사활동 담당 장학사, 초·중·고 봉사활동 담당교사 등 10인 이내 구성
- 역할: 경기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경기도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교육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및 활동 상황 검토 및 협의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담당자 협의회

- 구성: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의 경기도 담당자
- 역할: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학생 대상 봉사기관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적합 여부 판단, 봉사활동 실적 기록 방법 교육,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를 통해 학생 봉사활동 발전 방안 모색 등

○ 단위학교 학생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 학생주도 봉사활동 실천사례 교육감 표창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학생과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봉사, 지역사회 연계 봉사, 공유하고 일반화할만한 특별 봉사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지원청

○ 지역 내 봉사활동 유관기관(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31곳 및 VMS 기초지역 관리본부 25곳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봉사활동 지원 및 민원사례 발생 사전 방지

○ 초·중·고등학교 봉사활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기초 연수를 실시하여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안내 철저(연수 결과 보고)

- 초·중·고등학교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보고
- 관내 신설교가 봉사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추가 안내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학 교

-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학교별 봉사활동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 (학기 중에 추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학년 초 교사·학생·학부모에게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연수 및 안내 철저
 - 연수: 교사는 학년 초 연수 시, 학생은 학년 초 학교봉사활동 소양교육 시, 학부모는 학부모총회 시 구체적으로 실시
 - 안내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준 및 양식 탑재, 수시 안내물 홍보 게시
- 단위학교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현황을 보고하고,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협의하여 최종 결정(「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봉사활동 추진
-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봉사활동의 사전·사후 확인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지속적 관리
- 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및 확인서 발급 시 허위 및 편법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비교육적인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마.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기관별 운영 일정

내 용	일 정	담당기관
•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알림	- 2022.02.	도교육청
• 학교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 2022.03.	학교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담당자 연수	- 2022.02.24.(목) 예정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 2022.02.24.(목) 예정	도교육청
• 학교 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 연수 시기는 지역에서 결정(학년초)	교육지원청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현황 보고	- 교육지원청 지정일 자료집시스템 제출	학교 → 교육지원청
• 학교별 연수(교사·학생·학부모 대상)	- 학기초 실시	학교
• 지역내 봉사활동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현황 및 학교 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결과 보고	- 2022.04.26.(화), K-에듀과인시스템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 2022.04.26.(화), K-에듀과인시스템 제출	
• 봉사활동 운영	- 2022.03.01. ~ 2023.02. 28.	학교
• 경기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봉사활동 운영 협의	- 2022년 수시	도교육청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실무 담당자 협의	- 2022년 수시	도교육청
• 평가 및 환류	- 2022.12.	도, 지역 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1) 공통 지침
 - ②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③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영역별 지침
 -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③ 교외 봉사활동은 가급적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④ 봉사활동은 학교나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초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⑥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내 봉사활동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외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중·고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사전 교육과 사후 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돕기활동-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 지역사회활동-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화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 자연보호활동-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소양교육,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임(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 발생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 , >(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에 준하여 계획서 제출은 생략

3.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7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2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1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리더십 배양과정의 교육과정상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리더십 배양과정 참가 내용은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

4.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종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5. 민간기관·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6.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7.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8.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학교 연계는 필수 조건이 아님)
예)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
- 단,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을 인정함.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9.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이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 없음)

10.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 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1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예)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12.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 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 (해당 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3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다만, 동일 기관의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14.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의 봉사활동

- 재학생의(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중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5.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6.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7. 번역

- 공익적 목적으로 공식적 요청을 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음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활동 내용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활동 내용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의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8.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19. 학생이 실무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 실인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20.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하되,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 학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인 또는 인정

21. 헌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당해 학년도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 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2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진로체험 관련 활동(예: 학생기자활동, 자치법정 등)
-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자치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평가단 등)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호)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 시
유의사항 부분 참고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경기도교육청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의 활동이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 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중학생의 경우 학생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 **이 외 봉사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학교별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안내 바랍니다.**

※ 가정통신문 발송과 함께 학교홈페이지 탑재 요망

※ 온라인 교육자료 또는 콘텐츠 활용한 경우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시 안내

※ 위 내용은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상황에 적합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시고, **봉사활동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년초 학생 대상 **소양교육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

[서식1] 예시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결재	담임
인적 사항	경화여자고등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주관 기관			
활동 장소			
봉사 영역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p>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학생 성명 : (서명)</p> <p>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p>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서식3] 예시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서 (개인형)		결재	담당교사	교육과정부장	
프로젝트명					
담당교사					
인적사항	○○초·중·고등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주관 기관	예시) ○○초·중·고등학교				
봉사 장소	예시) 구체적인 장소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p>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학생 성명 : (서명)</p> <p>○○초·중·고등학교장 귀하</p>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흥미,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서식3-1] 예시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서 (모듬형·융합형)					결재	담당교사	교육과정부장
프로젝트명							
담당교사							
인적사항	학 번	성 명	비 고	학 번	성 명	비 고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p>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20 년 월 일</p> <p>대표학생 성명 : (인)</p> <p>○ ○ 중 · 고등학교장 귀하</p>							

※ 모듬형 또는 융합형에 따라 인적사항 비고란에는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로 기재합니다.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흥미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서식3-2] 예시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운영 보고서				
프로젝트명				
인적사항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총 ()시간		
	<p>○ 20 년 월 일 15:00~16: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학교 학생 자치회실 • 내용 - - <p>○ 20 년 월 일 16:00~17: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학교 운동장 • 내용 - - <p>○ 20 년 월 일 15:00~16: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학교 2층 복도 • 내용 - - 			
		활동 사진	활동 사진	활동 사진
		사진 내용 설명		
실천 결과 및 느낀점	<p>○ 실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결과 작성> - - <p>○ 실천 후 느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낀점 작성> - - 			

※ 예시 양식이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서식4] 예시

헌혈 학부모동의서·사후 확인서		결 재	담임
인적사항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헌혈 일시	20 년 월 일, 총 ()시간		
헌혈 주관 기관			
봉사 영역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헌혈(전혈) () / 헌혈(성분헌혈) ()		
<p>위와 같이 자녀의 헌혈에 동의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학부모 성명 : (서명)</p>			
○○ 고등학교장 귀하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서식5] 예시

() 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회의록(예시)

○○○○학교

회의일시	20 . 03. ○○. 14:00	회 의 참석자	위 원 장: 교감 ○○○ 부위원장: ○○○ 위원: 000, 000, 000, 000, 000, 000
회의장소			
회의안건	20 학년도 1학기 교내 봉사 활동 프로그램 심의 및 의결		
			기록 : ○○○
회 의 내 용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결내용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참고사항**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운 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 관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 페이지	http://www.1365.go.kr	http://www.vms.or.kr	http://dovol.youth.go.kr
경기도 내 센터 구성	경기도자원봉사센터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25개 기초지역관리본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군 센터 없음)
봉사활동 주영역	공공, 공익 관련	사회복지 관련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청소년 대상 (작은도서관, 박물관 등)
확인서 명칭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
확인서에 표현된 봉사주관기관명	봉사실적등록기관	관리센터[수요처]	현재는 없음. 수정 요청 중

※ 청소년활동진흥센터(DOVOL)는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에 흡수
→ 'e-청소년' 사이트 접속하면 '자원봉사 DOVOL' 과 연계됨

(e-청소년: 전국 2,300여개 공공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정보, 국제교류 정보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종합사이트)

◎ **봉사활동 실적의 나이스 연계 시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연계하면 주관기관명은 모두 '센터'로 입력됨
- 개인이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면 기관장명으로 출력되고(예: ~협회장), 봉사기관이나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출력해 주면 기관명으로 출력됨(예: ~협회)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는 봉사활동에 대해 인증만 할 경우도 있고 봉사활동 기관으로서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별도의 봉사기관이 있다면 봉사활동 주관기관명에 '○○시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아니라 해당 봉사기관명이 입력되어야 함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기관 교육 시 봉사활동 내용 및 기관명 입력에 대한 정확한 전달 필요

※ **봉사활동 실적 입력 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지침에 따라 입력**

-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입력
- '활동 내용'란에 객관적 활동 내용 및 봉사활동 제목에 한하여 기재하되, 구체적인 기관명, 대학명, 상호명, 강사명은 제외하여 입력
- '활동 내용'란에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 입력 불가

◎ 경기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봉사활동 관련 문의

- 1365자원봉사포털(경기도자원봉사센터) 031-256-1365
- VMS(경기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대표번호 031-213-8551
- DOVOL(경기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1-232-9383

◎ 1365자원봉사포털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연락처

순	지역센터명	전화번호
1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031) 253-1365
2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1544-7115
3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031) 906-1365
4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031) 757-6226
5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031) 8059-5680
6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032) 625-6501
7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595-1365
8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031) 411-1365
9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031) 8024-2671
10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031) 8045-2487
11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031) 312-7792
12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031) 998-1365
13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941-8212
14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031) 850-5745
15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798-1365
16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02) 2687-1365
17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031) 792-1365
18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031) 394-1365
19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031) 372-1365
20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843-1365
21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031) 633-1365
22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031) 565-1365
23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031) 674-1365
24	의왕시 자원봉사센터	031) 454-1365
25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031) 538-2417
26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031) 775-1365
27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885-1365
28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031) 865-1365
29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02) 502-2238
30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031) 581-1365
31	연천군 자원봉사센터	031) 834-1365

◎ VMS 25개 기초지역관리본부 연락처

연번	지역	전화번호
1	고양지역관리본부	031-922-5784
2	광명지역관리본부	02-2687-1091
3	광주지역관리본부	031-798-8808
4	김포지역관리본부	031-996-0094
5	남양주지역관리본부	031-563-0365
6	동두천지역관리본부	031-864-4769
7	부천지역관리본부	032-662-7713
8	성남지역관리본부	031-756-3579
9	수원지역관리본부	031-253-2310
10	시흥지역관리본부	031-404-4347
11	안산지역관리본부	031-401-6472
12	안성지역관리본부	031-675-7676
13	안양지역관리본부	031-446-4065
14	양주지역관리본부	031-857-7973
15	양평지역관리본부	031-775-5995
16	여주지역관리본부	031-883-3304
17	오산지역관리본부	031-374-4569
18	용인지역관리본부	031-286-7918
19	의정부지역관리본부	031-852-4540
20	이천지역관리본부	031-638-4427
21	파주지역관리본부	031-941-6340
22	평택지역관리본부	031-653-5020
23	포천지역관리본부	031-531-0268
24	하남지역관리본부	031-795-4686
25	화성지역관리본부	031-366-4023